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8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윤건영·김용민·허성무

이용선 • 박수현 • 김한규

채현일 • 전용기 • 황명선

한병도 • 박희승 • 이광희

최민희 • 김 현 • 김영배

조계원 • 고민정 • 정태호

주철현 · 강준현 · 정진욱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보존하고 공공에 공개함으로써 국 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비밀 지 정 기록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래로 총 17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202 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6차례나 이뤄짐. 이로 인해 비밀 지정 대통령기록물 내용 일부가 공개돼 대통 령기록물이 정치적 쟁점마다 악용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의한 열

람 요건이 수사·사법기관의 열람 요건보다 까다로워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없도록 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 항제2호).
- 나. 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 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 기존 대통령기록관 직 원만 열람 가능하던 것을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3호).
- 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 5항 및 제18조제6항 신설).

라. 누구든지 유고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7항 신설).

법률 제 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를 "판단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만, 열람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리인"을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평시대리인"이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평시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전직대통령, 평시대리인,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방법·절차,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제5항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결과 통보"로 한

다.

- 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유고시대리인등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 ① ~ ③ (생 략)
- ④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1. (현행과 같음)
-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이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

- 3. <u>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u> 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 인을 받은 경우
- ⑤ ~ ⑥ (생 략)
-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생 략)
 -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 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 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 3. <u>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만, 열람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u>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2	
	- —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	평
시대리인"이라 한다)	
3	- —
	- —
평시대리인	
	- —
	- —

처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삭 제>

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3 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유 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추 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 관의 장에게 유고시대리인등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① 누구든지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전직 대통령, 평 시대리인, 유고시대리인등의 열 람 방법・절차,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제 5항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 정 요청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결 과 통보-----

---.